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案

1.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설계·시공 및 감리과정에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부실공사를 야기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위험도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案 제2조)

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案 제6조, 제7조 및 제14조)

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관리공단 또

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案 제8조)

라)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이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을 해제하도록 함 (案 제16조)

마)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는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 보존하도록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案 제17조)

바)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며, 시설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案 제19조)

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건설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

공제조합의 출연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案 제25조)

아) 공공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함 (案 제32조)

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자는 설계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案 제34조 및 제39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키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특별규정을 둬으로써 건설공사시공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물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한다.

2) 「1종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 시설물」이라 함은 1종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라 하고 공공관리주체 이외의 관리주체를 민간관리주체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안전 관리공단 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구조적 안전성, 하자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유지관리업」이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유지관리업자」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개발, 소요되는 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개발 등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건설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1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의무 및 대상)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①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건설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다.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의 보고 등)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결과표 또는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건설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한다.

② 건설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된 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조치

제14조 (사용제한조치)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

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공중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민간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보수조치 등)

① 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수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① 시공자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해제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이 해제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구조상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의 책임을 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종류, 보존기간 등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경우 당해 시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9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맞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1년 이상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로 인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제22조 (등록의 취소 등)

건설부 장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0호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여 공중에 위험을 끼친 때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제23조 (행정처분시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계속)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하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유지관리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사무소(현장사무소 및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 장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설물장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으로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시설안전관리공단

제25조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①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의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뒤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8조 (재원)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① 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의 실시
2.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시설물별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개발
5. 각종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6.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부 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안전관리 관련사업

제30조 (지도·감독)

① 건설부 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 (민법의 적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 (시설물유지관리에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유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설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특례규정)

① 시설물은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 인력·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및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 또는 구조상의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에 위험을 끼친 민간관리주체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 또는 구조상의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에 위험을 끼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 또는 구조상의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에 위험을 끼친 자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경우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3.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4.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물의 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영위한 자
7.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설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9.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9조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특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의 규정

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 또는 구조의 결함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고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게을리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게을리 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장이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표 또는 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표 또는 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소관행정청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안전점검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6. 제14조 제3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이 한 민간관리주체
8.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 9.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관련서류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0.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1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건설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건설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공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2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준공되어 하자책임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21조 (등록명의 대여 및 금지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